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집행 부적정(회계연도 개시 전 선집행)
기 관 명 강선예일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에 따라 유치원 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하고, 같은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 제33조(지출의 방법),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따라 유치원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 집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23조(결산) 제3항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고,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의 예산액·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불용액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선예일유치원은 아래 [표1]와 같이 감사 대상기간인 2018학년도 말

유치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9학년도 수업료 선입금액 금11,662,000원 중 일부인 금3,268,774원을 2019학년도 회계 개시 이전에 부당하게 선지출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문란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1] 2018회계연도 수익자부담금 수입액 및 이월액 비교 내역 비교

[단위: 원]

구 분	2018회계 차년도수업료 (A)	2019회계 이월액 (B)	차액 (A-B)	비고
금 액	11,662,000	8,393,226	3,268,774	

※ (A)와 (B)는 강선예일유치원의 현금출납부 및 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강선예일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직원 퇴직금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강선예일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도정산 사유)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퇴직금의 중간 정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강선예일유치원에서는 감사 대상기간인 2018~2020회계연도 중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교직원 ○○○의 퇴직금을 2019.2.25.자로 금1,300,000원,

2021.2.25.자로 금1,450,000원씩 각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증빙 없이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일자 및 금액은 강선예일유치원의 현금출납부 및 유치원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름

조치할 사항 강선예일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